



Oct



RICON

건설 BRIEF

건 설 브 리 프

산업동향

-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 필요성 검토
 - 의무가입 요구되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

정책동향

- 민간 건설공사 일요휴무제의 검토과제
 - 건설사업주 노무비 부담과 건설근로자 추가 근로소득 확보 기회 상실 초래

시장동향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무리한 파업 관행으로 산업피해 심각
 -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처벌과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 대처 필요

산업동향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 필요성 검토 - 의무가입 요구되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이은형 책임연구원
(eunhyung@ricon.re.kr)

1.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이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직원이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

- 건설업에서는 공사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으로서, “영업배상책임보험·공제”나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공제”라는 명칭으로 불림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급업자 배상책임’은 피보험자인 건설사업자가 수행하는 작업상의 잘못 또는 해당 작업을 목적으로 소유 및 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기인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임. 그리고 ‘건설기계업자 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건설기계와 해당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재는 발주자나 원도급자의 요구 또는 건설사업자가 자율사항임(임의가입). 흔히들 알고 있는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이나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구별됨.

◆ 우리 생활에서 건설현장을 접하는 일이 점차 늘어나면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 예를 들어 도심에서 진행되는 도로공사나 상하수도 공사현장에는 표지판 설치 등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심야시간의 보행자나 통행차량의 추락이나 충돌같은 사고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음.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장비의 낙하, 철거대상 구조물의 전도나 붕괴도 일반적인 위험사례로 들 수 있음.
- 실제로 금년 6월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광주 사례(재개발 철거현장의 건물붕괴)에서는 다수의 일반인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제3자 배상에 필요한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았던 탓에 피해보상이 순조롭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짐.

2. 의무가입이 적용되더라도 순차적으로 확대

◆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이 높더라도 모든 건설현장에 이를 강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에 점진적인 접근이 요구

- 예를 들어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나 격오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경우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그렇다면 전면적인 의무화는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지출로 귀결될 수 있음.
- 따라서 앞서 언급된 광주 사례처럼 일반인 등의 통행량이 많거나 인구밀집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추이와 시행결과는 모니터링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 될 것임.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 제시하는 우선시행공사의 예시는 아래의 표와 같음.
- 이 과정에서 위험공사 등의 현황집계가 종전과 달리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부수적 효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우선시행대상 (예시)

지 역	공 사 종 류	건축물 용도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중 구(區)가 있는 시(市), 제주도(관광객 감안) - 251개 지역중 111개	도로공사, 조경공사, 관로공사, 도장공사, 철거공사 등	공동주택중 아파트·연립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교정·군사시설, 발전시설

◆ 사회편익에 필요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검토를 통해 최소 적용범위와 실행 내역 등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인 맥락은 건설사업자에게 위험도 등이 높은 건설현장에서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을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임.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미가입시의 페널티, 보험료의 지급주체와 지급방법 등의 세부사항도 논의될 필요가 있음.
- 관련 업계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무와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를 법령상에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짐(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제44조의2(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중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제3자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인 건설사업자는 하수급인이 가입한 보험·공제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영업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①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44조의2 제1항의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책동향

민간 건설공사 일요휴무제의 검토과제

- 건설사업주 노무비 부담과 건설근로자 추가 근로소득 확보 기회 상실 초래 -

박광배 연구위원
(jwjbpark@hanmail.net)

1. 민간 건설공사 일요휴무제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내용

◆ 2021년 9월 24일 민간 건설공사의 일요휴무제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제출

- 김교흥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 2 본문을 개정하는 것임
 - 일부개정안 발의 취지는 실제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일요휴무가 정착돼 있으므로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
 - 또한 휴일은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공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해지므로 건설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일요휴무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임
 - 일부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 본문 개정을 제안하고 있는데, 현행 본문 중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건설공사”로 개정함으로써 민간 건설공사까지 일요휴무제를 확대하는 것임
 - 또한 현행 본문 중 “발주청이 사전에”부분을 괄호를 추가하는 개정, 즉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이를 통해 일요일 공사 시행의 예외 허용을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임

◆ 민간 건설공사에 일요휴무제 도입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직접적이어서 검토 및 선결과제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제103조의2에서 일요휴무제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예외사유는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고, 긴급 보수·보강공사 필요 시, 날씨·감염병 등 작업일수 부족으로 추가작업 필요 시, 교통·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가 어려운 경우, 민원·소송·보상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요인으로 공정이 지연된 경우, 도서·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 단기공사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임
 - 일요일에도 공사가 시행될 수 있는 예외사유는 사후적·보완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음
 - 즉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제4호의 공법·공사 특성상 연속적 시공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적 조치라고 판단됨

- 이처럼 일요일 공사시행에 대한 예외규정을 통해서서는 민간 건설공사 일요일휴무제가 야기할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건설업계는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에 관한 구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야기된 공사현장 폐쇄로 야기된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한 사례에서도 공공공사는 기준이 마련되었지만, 민간 건설공사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이런 전례를 감안할 때 민간 건설공사 일요일휴무제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와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건설투자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상회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선결과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함

2. 민간 건설공사 일요일휴무제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민간 건설공사 일요일휴무 법제화 효과에 대한 논의 필요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2018년 종합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일요일에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62.3%였으며, 일이 있어도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는 37.7%였음
-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건설근로자들은 일요일 근로와 휴식의 선택과정에서 재량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도 일요일 근로에 관해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며,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

◆ 민간 건설공사 일요일휴무 법제화는 건설사업주와 건설근로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건설사업주는 노무비 상승을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 공사기간 연장은 원가상승 요인이며, 일요일휴무 법제화는 일요일 근로 시 위법행위에 수반되는 추가적인 노무비 상승이 발생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원가상승이 야기돼 건설사업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건설근로자는 추가적인 근로소득 확보 기회의 상실을 야기하게 되며, 건설근로자의 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2012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의뢰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63.9%의 건설근로자가 가계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었음
 - 일요일 근로는 평일 근로와 동일한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추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전술한 일요일 근로 현황조사의 일요일 근로를 설명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평균 연령 50대 후반의 건설근로자의 추가적인 근로소득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시장동향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무리한 파업 관행으로 인한 산업피해 심각

-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처벌과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 엄정 대처 필요 -

홍성호 선임연구위원
(hsh3824@ricon.re.kr)

◆ 건설노조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1년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는 등 무리한 파업 관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산업피해 심각

- 21년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의원(국민의 힘)이 공개한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 및 실제 조사 사례'에 따르면 '18년 1월부터 '20년 5월까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례는 12개사·23개 현장에서 총 47건인 것으로 집계
- 양대 노총 간 경쟁에서 각 지역 현장에 일선 노조가 100여 개 만들어지면서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이전의 2천건 대에서 1만건 대로 대폭 증가했다는 지적 제기
- 사업장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폭행과 협박, 출입 봉쇄, 불법점거를 포함한 작업 방해행위, 채용 거부 사업장에 대한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나 각종 규정 위반 신고 등 건설노조의 횡포 심각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및 무리한 파업 관행으로 근로손실과 건설현장의 생산손실이 매우 큰 상황
 - 지난 10년간(2009~2019년) 한국과 G5국가들의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하면 한국 38.7일, 프랑스 35.6일, 영국 18.0일, 미국 7.2일, 일본 0.2일로 선진국보다 높은 편

◆ 노조의 직장점거를 불법행위로 금지하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노조의 사업장 내 부분 점거 허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직장점거를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파업 금지 위반 시 미국·영국은 파업 참여 근로자의 징계·해고까지 가능하고, 독일은 사업장 출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강제로 저지해 위력으로 파업참가를 강요하면 형법상 협박죄 적용
-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파업 시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부분 점거를 허용. 직장점거는 건설현장 시설물 손괴, 비조합원 및 사무직원 등에 대한 작업방해와 폭력행사 등의 불법행위로 이어져 건설사의 큰 손실 유발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직장점거 제도 비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직장점거는 모두 불법 美, 英은 징계 및 해고 가능, 獨은 사업장 출입 방해시 협박죄 적용	부분·병존적 점거 허용

*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노조의 무리한 파업, '21. 10. 25

한국과 미국의 직장점거 관련 판례 비교

미국	한국
파업의 형태가 직장을 점거하는 파업으로 행할 경우 파업권 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전미노동관계법(NLRA) 제8조(부당노동행위) 위반이 된다.(NLRB v. Fans)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점거는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일부분이고, 사용자측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일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7.12.28., 2007도5204)

*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노조의 무리한 파업, '21. 10. 25

◆ 주요 선진국과 달리 국내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처벌 대상을 사용자로 국한하는 등 기업에 불리한 제도로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

- 미국과 일본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원상회복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특히 일본은 1949년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며 지배개입·경비원조를 금지했고,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미국은 연방노동관계법(NLRA) 제정 시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만 규정했지만, 노조의 교섭력이 향상하면서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포함
 - 노조가 고용주에 금전을 강요하거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미국법상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건설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무리한 파업 등에 대한 건설사의 대응을 위해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제한,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엄정한 공권력 대처 필요

- 건설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제한, 엄정한 공권력 대처 등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 추진 필요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이 부분 점거를 비롯한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점거 행위 전면 금지
 -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자에 국한된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 행위 신설 필요
 - 엄정한 공권력 대처로 건설노조의 무리한 파업의 장기화 방지 필요